

## 투자설명서

#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 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투자신탁명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67137) - 클래스별 펀드코드 : A클래스(67138), C클래스(67139), Ce클래스(80591)
자산운용회사명	삼성투자신탁운용(주)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 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증권(주) (☎ 1588-2323, www.samsungfn.com)</li> <li>-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1588-2600, www.tysec.co.kr)</li> <li>- 우리투자증권(주) (☎ 1555-0000, www.wooriwm.com)</li> <li>- 삼성생명보험(주) (☎ 1588-3114, www.samsunglife.com)</li> <li>- 이트레이드증권(주) (☎ 1588-2428, www.etrade.co.kr)</li> <li>- 리딩투자증권(주) (☎ 1544-7004, www.leading.co.kr)</li> </ul> <p><b>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b></p> <p><b>※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b></p>
작성기준일	2008년 08월 22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신탁계약기간
2. 종류
3. 자산운용회사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5. 주된투자권유대상
6.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7. 투자목적
8. 투자전략
9. 투자위험
10. 투자대상
11. 투자제한
12. 투자실적 추이
13.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자산평가
15.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핵심설명서)

###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5 쪽)

- 명 칭 :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 2 호 (펀드코드 : 67137)  
- A 클래스(67138), C 클래스(67139), Ce 클래스(80591)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종류형·모자형
- 자산운용회사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II 투자정보(☞본문 5~7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베트남 및 아세안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40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임. - 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아세안(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및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삼성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 -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1 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베트남 및 아세안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samsungfund.com">www.samsungfund.com</a> )에서 확인 가능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의석	1967	수석	31 개	16,133 억	- New York Univ MBA -주식 운용(대신증권,동부화재 2년 9개월, 교보투신운용사 2년 4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 1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최근 1년 (*07.08.01~*08.07.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4.02~*08.07.31)
A 클래스	-8.07%				0.59%
C 클래스	-8.88%				-0.29%
Ce 클래스	-8.17%				-8.17%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7~11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w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Wrap 전용	온라인전용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 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sup>1)</sup>	납입금액의 1%	-	-	-	
	환매수수료 <sup>1)</sup>	30 일미만 이익금의 10%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 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회사보수	연 0.98%	연 1.88%	연 0.0%	연 1.60%
		기타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보수합계	연 1.94%	연 2.84%	연 0.96%	연 2.56%
	기타비용 <sup>2)</sup>	연 0.003%	연 0.003%	연 0.003%	연 0.003%	
총보수·비용비율 <sup>3)</sup>		연 1.943%	연 2.843%	연 0.963%	연 2.563%	

- 주 1) 선취수수료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 일미만, 90 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8.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0 영업일(D+9)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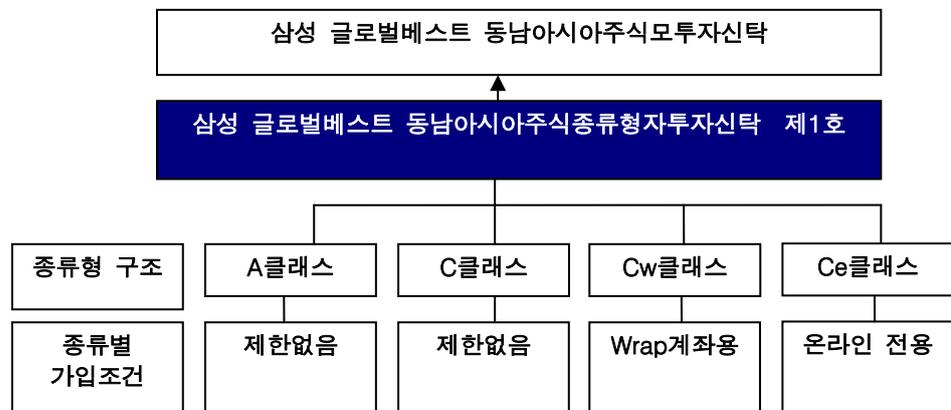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67137)  
- 클래스별 펀드코드 : A클래스(67138), C클래스(67139),  
Ce클래스(80591)
2. 신탁계약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4. 자 산 운 용 회 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해외위탁 자산운용사 -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 업무위탁범위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7. 04. 02. 투자신탁 설정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현재 (’08.07.31)	6개월전 (’08.02.01)	1년전 (’07.08.01)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	3년전
A클 래스	수탁고금액	135	158	129	-	-	-	-
	수탁고증가율	-14.62	23.63	-	-	-	-	-
C클 래스	수탁고금액	42	51	39	-	-	-	-
	수탁고증가율	-17.08	32.09	-	-	-	-	-
Ce클 래스	수탁고금액	1	-	-	-	-	-	-
	수탁고증가율	-	-	-	-	-	-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주식 등에 분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등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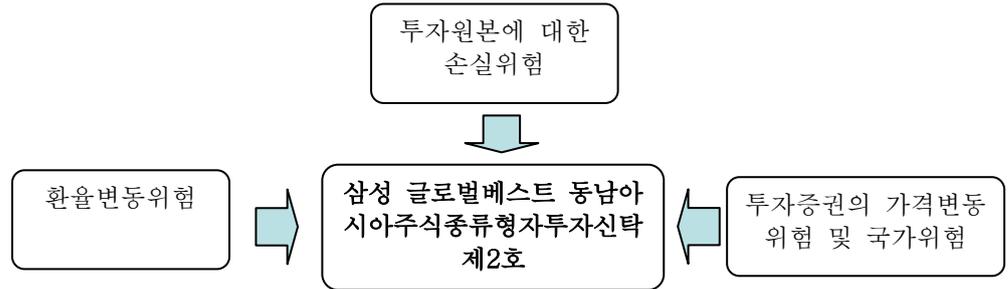
□ 외국통화표시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 주식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국가 주식과 베트남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아세안 국가 및 베트남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발전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 및 아세안 국가로의 분산투자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리미티드(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에 위탁운용하고 국내 채권 및 유동성은 삼성투신운용이 운용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 및 제 5 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투자증권 가격변동 및 국가위험

신탁재산 대부분을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해당국가들의 경제 및 환율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환율변동위험

환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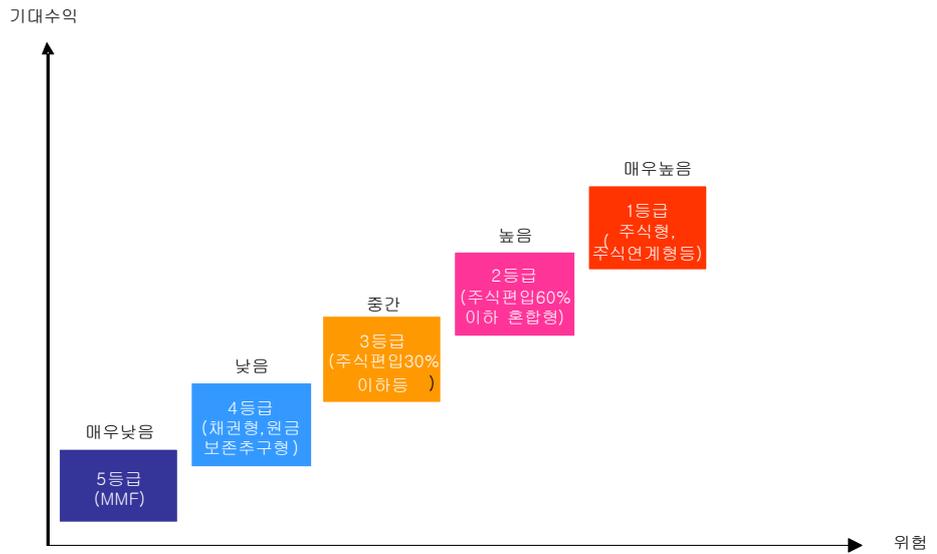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p>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p> <table border="1"> <tr> <td>판매회사</td> <td>인터넷홈페이지</td> <td>판매회사</td> <td>인터넷홈페이지</td> </tr> <tr> <td>삼성증권</td> <td>www.samsungfn.com</td> <td>동양종합금융증권</td> <td>www.tysec.co.kr</td> </tr> <tr> <td>우리투자증권</td> <td>www.wooriwm.com</td> <td>삼성생명보험</td> <td>www.samsunglife.com</td> </tr> <tr> <td>이트레이드증권</td> <td>www.etrade.co.kr</td> <td>리딩투자증권</td> <td>www.leading.co.kr</td> </tr> </table>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삼성생명보험	www.samsunglife.com	이트레이드증권	www.etrade.co.kr	리딩투자증권	www.leading.co.kr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삼성생명보험	www.samsunglife.com														
이트레이드증권	www.etrade.co.kr	리딩투자증권	www.leading.co.kr														

※ 모두자산탁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 및 공시는 자투자신탁과 같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홍의석	수석	- New York Univ MBA -주식 운용(대신증권,동부화재 2년 9개월, 교보투신운용사 2년 4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 운용전문인력에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07.08.01~ ‘08.07.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4.02~ ‘08.07.31)
A 클래스	-8.07%				0.59%
C 클래스	-8.88%				-0.29%
Ce 클래스	-8.17%				-8.17%

※ Ce클래스의 수익률은 2008.03.10 기준으로 작성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07.04.02~ 08.04.01)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10.55%	-	-	-	-
C 클래스	9.58%	-	-	-	-
Ce 클래스	-	-	-	-	-

※ Ce클래스의 수익률은 2008.03.10 기준으로 작성됨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클래스	C클래스	Cw클래스	Ce클래스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 이익금의 10%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50%	환매시
-------	------------------	---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 A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8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sup>1)</sup>	순자산총액의 연 0.003%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943%	

(2)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 C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88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sup>1)</sup>	순자산총액의 연 0.003%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843%	

(3)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 Cw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sup>1)</sup>	순자산총액의 연 0.003%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963%	

(4)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 Ce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	-------------	------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6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sup>1)</sup>	순자산총액의 연 0.003%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563%	

註)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년도(2007년04월02일 ~ 2008년04월01일)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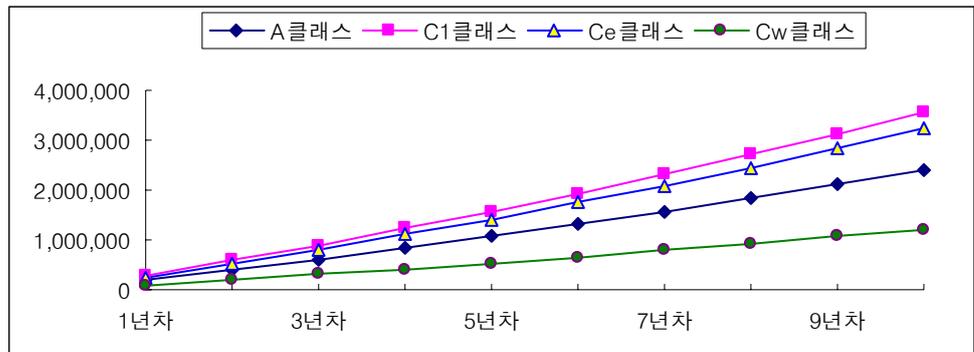
<기타비용>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A 클래스	192,357	606,405	1,062,894	2,419,446
선취수수료 : 1000 만원*1%= 10 만원				
C1 클래스	284,300	896,256	1,570,937	3,575,895
Ce 클래스	256,300	807,986	1,416,219	3,223,714
Cw 클래스	96,300	303,586	532,118	1,211,251



-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A 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사항>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 및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범위

- 외국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Mutual Fund, Reits, ETF 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단,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가 손실된 경우에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에 대한 적용기간은 법 시행일(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국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

만 적용이 됩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 1. 매입

####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0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  
급

	제1영업일	••	제4영업일	제5영업일	•••	제9영업일	제10영업일
17시 [오후5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17시 [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 주1)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 모든 클래스에 환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입니다. 단, A 클래스 수익증권인 경우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및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투자비중은 해당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외국통화표시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3)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모투자신탁의 운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에 위탁운용하고 국내 채권 및 유동성은 삼성투신운용이 운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아세안 국가 및 베트남 등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감소를 추구합니다.

※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현황

- ①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는 5억 5천만명의 인구와 GDP US\$860 billion을 기록하고 연간 5~10%의 GDP성장률을 기록
- ②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국가

※ 모투자신탁의 자세한 투자전략 등은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위험 (모투자신탁 포함)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p>이머징마켓 위험 (국가위험)</p>	<p>일부 아세안 국가시장의 유가증권은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 대상국 중에 하나인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투자자금송환불 능위험</p>	<p>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규제위험</p>	<p>펀드가 투자하는 일부 시장들의 매매와 정산관행이 선진국시장의 그것과 비교할 경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산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펀드에 의하여 투자이익의 실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펀드는 매매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산 불가 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즉시 결제거래 방식이 아닌 선지급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나라의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펀드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p>
<p>시장위험 및 개별위험</p>	<p>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아시아의 유가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환율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현재 베트남통화(동)은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 그 환율의 가치를 결정하는 페그제입니</p>

	다. 만일 베트남 통화 당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여 페그제의 연계통화 또는 연계통화의 비율을 변경하거나 페그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동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100%이하	○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모투자신탁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p>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④ 및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p>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모자형의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가능

※ 모두자산탁의 자산평가는 위와 같습니다.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input type="checkbox"/> <b>평가 항목</b>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input type="checkbox"/> <b>선정방법</b>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투자자산탁 제2호 - A클래스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투자자산탁 제 2 호 - C클래스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투자자산탁 제 2 호 - Cw클래스

-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
- 삼성 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 2 호-Ce 클래스
- ：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9	삼성생명투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04	수탁고 20조 달성
11	연기금 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
2002.10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10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11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8.03	관리자산 74조원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3) 업무위탁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약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의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 매매주문업무
-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2. 연혁 :
  - 1986년 8월 22 OCBC Asset Management Limited (이하‘OAM’) 설립
  - 2005년 9월 OAM과 Straits Lion Asset Management Limited(이하 ‘Straits Lion’) 통합
  - 2005년 9월 26 신규사명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이하 ‘Lion Capital’))
3. 주요주주: Great Eastern Holdings Limited가 70%,  
Orient Holdings Private Limited가 30% 소유  
(Great Eastern Holdings Limited와 Orient Holdings Private Limited의 최대 주주는 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임 (Oriented Holdings Private Limited: 100%, Great Eastern Holdings Limited: 87%))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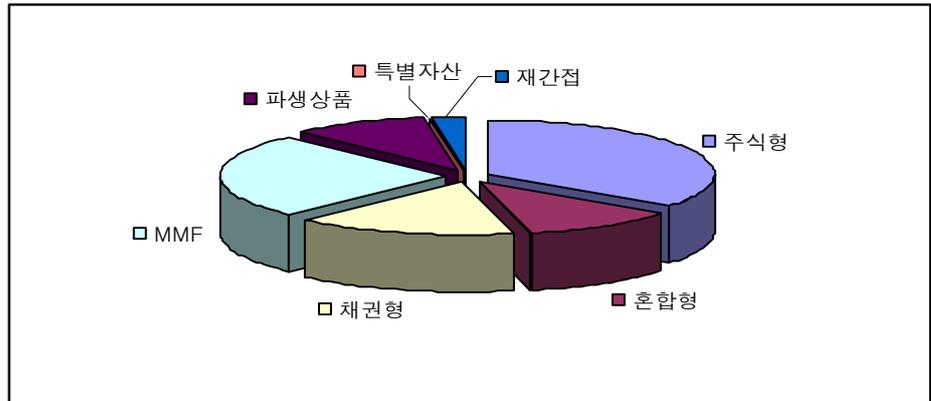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8.3.31	'07.3.31
현금및예치금	164,275	123,364	영업수익	102,200	75,382
기타자산	59,991	56,200	영업비용	60,610	40,142
<b>자산총계</b>	<b>224,266</b>	<b>179,564</b>	영업이익	41,590	35,240
예수부채	45,136	15,999	영업외수익	882	1,786
기타부채	12,928	9,957	영업외비용	81	16
<b>부채총계</b>	<b>58,064</b>	<b>25,956</b>	법인세차감	42,391	37,010
자본금	93,413	93,180	전계속사업	-	-
잉여금	72,431	60,428	이익		
기타포괄손익	358	-	<b>당기순이익</b>	<b>30,610</b>	<b>26,894</b>
누계액					
<b>자본총계</b>	<b>166,202</b>	<b>153,608</b>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06월 30일 기준,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81,793	25,724	36,406	59,566	22,458	100	5,713	-	231,760

※ 연기금 및 자문 제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8.07.말 기준)

성 명	나이 (년생)	직 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홍의석	1967	수석	31 개	16,133 억	- New York Univ MBA - 97.07~99.03 대신증권 - 99.10~01.01 동부화재 - 01.01~03.05 교 보투자신탁운용 - 03.07~05.10 세종증권	해외투자 1 팀 운 용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Ms. Janet Liem, Head, Asia Pacific ex
운용자산규모	
주요경력 및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09월에 Asian Equities 파트의 리더로 Lion Capital에 입사</li> <li>- Ms. Liem은 1987년부터 투자애널리스트로서 금융산업에 종사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싱가포르 경제개발 위원회와 Bank of America의 경제조사/기획팀에서 근무하였다. 1993년에 Ms. Liem은 연구파트 리더로서 UOBAM에 입사하였으며, 이후 Asia Pacific Equity파트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Deputy CIO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Ms. Liem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경제학과 통계학 학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New South Wales대학의 AGSM스쿨에서 MBA를 마쳤다.</li> </ul>

주 1)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	주소 및 연락처	연혁
삼성증권(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 : 1588-2323)	www.samsungfn.com 참조
삼성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 : 1588-3114)	www.samsunglife.com 참조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 : 1588-2600)	www.tysec.co.kr 참조
우리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 (☎ : 1544-0000)	www.wooriwm.com 참조
이트레이드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8층 (☎ : 1588-2428)	www.etrade.co.kr 참조
리딩투자증권(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 : 1544-7004)	www.leading.co.kr 참조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IV.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1588-1770)
회사연혁	www.kr.hsbc.com 참조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V. 일반사무관리회사

해당사항 없음

## VI.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회사명	소재지	설립일	등록일	연락처
KIS채권평가(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2000.6.20	2000.6.30	02-3770- 0400
한국채권평가(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2000.5.29	2000.7.1	02-399- 3350
나이스채권평가(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3 번지 대인빌딩 15층	2000.06.	2000.06	02-739- 2545

### 2. 연 혁

KIS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20	설립
2000. 06. 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01. 01	환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2. 07. 02	증권업협회-KIS-환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한국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5. 29	설립
2000. 07. 0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2. 05.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나이스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설립
2000. 0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10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 3.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 VI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동하여야 합니다.

###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 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 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운용회사(www.samsungfund.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삼성생명보험	www.samsunglife.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우리투자증권(주)	www.wooriwm.com
이트레이드증권	www.etrade.co.kr	리딩투자증권(주)	www.leading.co.kr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1.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모투자신탁

- 1.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2. 종류              주식형, 추가형, 모자형의 모투자신탁
- 3.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 04월 02일 설정
- 5. 주된투자권유대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만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6. 모투자신탁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 해외위탁자산운용사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140조에 의거한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증권등에 간접투자하게 되며, 이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 주식모투자신탁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100%이하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100%이하
삼성 퇴직연금 동남아시아주식자투자신탁 제1호		60%이상
삼성 퇴직연금 동남아시아40혼합자투자신탁 제1호		40%이하

### 7. 투자전략      □ 기본 운용전략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주식과 베트남주식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해외 자산운용은 라이온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Lion Capital Management Limited)에 위탁운용하고 국내채권 및 유동성은 삼성투신운용이 운용합니다.
- 아세안 국가(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및 베트남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의 투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 국가별 배분전략 - 국가별 주식투자비율

- 베트남주식시장에 신탁자산의 20%이하를 나머지 자산은 아세안 국가에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현황

-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는 5억 5천만명의 인구와 GDP US\$860 billion을 기록하고 연간 5~10%의 GDP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8.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해외주식	60%이상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중 국내주식(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의미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주식[베트남 및 ASEAN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IPO 주식을 포함한다.)과 <b>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베트남 및 아세안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b>
② 국내채권	40% 이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제외)
해외채권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증권중 국내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신용등급 A- 이상)
③ 어음	40% 이하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신용등급 A2- 이상)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 등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li> <li>○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li> </ul>
		30% 이하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20% 이하	○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
⑦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기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국내주식, 국내채권, 국내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장내 파생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통화관련장내 파생상품, 해외장내파생상품</li> </ul>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이하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li> <li>○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 가능</li> </ul>	
	해외장내, 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등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li> </ul>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li> <li>○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함</li> </ul>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9.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및 어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채무증서 또는 어음,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다음 1월간 적용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법제2조제8호에서 정의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과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07.08.01 ~ ‘08.07.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4.02 ~ ‘07.12.31)
투자신탁	-6.38%	-	-	-	2.66%
비교지수	-6.49%				-4.91%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07.04.02~ 08.04.01)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12.99%	-	-	-	-
비교지수	-1.35%				

11.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등의 업무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1.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2.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3.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 예탁 및 결제비용
4.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6.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7.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합계
삼성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제1호	A 클래스	0.9%	0.98%	0.06%	1.94%
	C 클래스	0.9%	1.88%	0.06%	2.84%
삼성글로벌베스트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제2호	A 클래스	0.9%	0.98%	0.06%	1.94%
	C 클래스	0.9%	1.88%	0.06%	2.84%
	Cw클래스	0.9%	0.0%	0.06%	0.96%
	Ce클래스	0.9%	1.60%	0.06%	2.56%
삼성 퇴직연금 동남아시아주식자투자신탁 제1호		0.7%	0.9%	0.04%	1.64%
삼성 퇴직연금 동남아시아40혼합자투자신탁 제1호		4.5%	7.5%	0.3%	12.3%

12.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권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최초매수시 상담 및 고객확인란

계좌번호		매수금액	금	원정 (₩ )
펀드명				
상품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생계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채투자여부	<input type="checkbox"/> 찬성 <input type="checkbox"/> 반대	
저축형태	<input type="checkbox"/> 임의식 <input type="checkbox"/> 거치식 <input type="checkbox"/> 적립식 <input type="checkbox"/> 자유적립식	저기축기간	( )개월	저기축액
펀드유형	<input type="checkbox"/> MMF <input type="checkbox"/> 채권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형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혼합형	매수결제	<input type="checkbox"/> 당일 <input type="checkbox"/> 익일	환매결제
기타사항	<i>연금저축, 부가서비스, 보험서비스, 웰스플랜 상품선택사항 등 기타사항작성</i>			
투자설명서 통보처 (유선신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자택 <input type="checkbox"/> 우편직장	처리시각	고객연락처	

투자신탁 명칭 : 삼성 글로벌베스트 동남아시아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